

가 축 전 염 병 예 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관리인의 자격 취득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현행화(안 제8조, 제12조, 별표2, 별표3)
- 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 다. 검역관리인 자격취득 요건을 전문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전에 가축
방역 업무에 종사한 경우도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 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점검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종사한 자”를 “종사한 자(해당 학력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인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1항 본문·단서”를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출입·조사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 이행 명령

별표 2 제1호마목 및 바목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법 제

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제1항”을 “법 제6조의3제1항”으로,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2”를 “제2항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의2”를 “제2항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의3”을 “제2항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의4”를 “제2항제3호의4”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의5”를 “제2항제3호의5”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의6”을 “제2항제3호의6”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수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너목까지와 러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60조제1항제1호	2,500	3,500	5,000
--	--------------	-------	-------	-------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2,500	3,500	5,000
파.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7	500	750	1,000
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	2,500	3,500	5,000
거.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의8	500	750	1,000
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2,500	3,500	5,000
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6호	2,500	3,500	5,000

별표 3 제2호더목(중전의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5호	2,500	3,500	5,000
---	--------------	-------	-------	-------

별표 3 제2호 머목(중전의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축산제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	2,500	3,500	5,000
---	--------------	-------	-------	-------

별표 3 제2호버목(중전의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의8”을 “제2항제3호의9”로 하고, 같은 호 서목(중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어목(중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저목(중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의2”를 “제2항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호 처목(중전의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의3”을 “제2항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중전의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터목(중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퍼목(중전의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허목(중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3호의2”를 “제3항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호 고목(중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를 “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노목(중전의 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2”를 “제2항제5호의2”로 하며, 같은 호 도목(중전의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3”을 “제2항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로목(중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4”를 “제2항제5호의4”로 하며, 같은 호 모목(중전의 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의2”를 “제3항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보목(중전의 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의3”을 “제3항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 소목(중전의 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의4”를 “제3항제4호의4”로 한다.

별표 3 제2호오목(중전의 고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5”를 “제2항제5호의5”로 하고, 같은 호 조목(중전의 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6”을 “제2항제5호의6”으로 하며, 같은 호 초목(중전의 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7”을 “제2항제5호의7”로 하고, 같은 호 코목(중전의 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8”을 “제2항제5호의8”로 하며, 같은 호 토목(중전의 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9”를 “제2항제5호의9”로 하고, 같은 호 포목(중전의 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의5”를 “제3항제4호의5”로 하며, 같은 호 호목(중전의 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10”을 “제2항제5호의10”으로 하고, 같은 호 구목(중전의 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5호의11”을 “제2항제5호의11”로 하며, 같은 호 누목(중전의 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5호”를 “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두목(중전의 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5호”를 “제3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루목(중전의 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6호”를 “제3항제6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무목(종전의 토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6호”를 “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부목(종전의 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7호”를 “제3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수목(종전의 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8호”를 “제3항제8호”로 하고, 같은 호 우목(종전의 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8호의2”를 “제3항제8호의2”로 하며, 같은 호 주목(종전의 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9호”를 “제3항제9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추목(종전의 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쿠목(종전의 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10호”를 “제3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투목(종전의 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11호”를 “제3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푸목(종전의 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12호”를 “제3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후목(종전의 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13호”를 “제3항제1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6)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 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 -----
1.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1. 법 제20조제2항-----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의학·약학·간호학·축산학·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①----- ----- 종사한 자(해당 학력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인정한다)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 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20조제1항·제2항 -----
1. ~ 4. (생략)	-----
② ~ ④ (생략)	-----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1. ~ 2의2. (생략)	-----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 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 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 하기 위한 출입·조사
<신 설>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 한 방역관리계획 이행 명령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참고 1] 별표 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 11조제1항 관련)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 11조제1항 관련)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 라. (생 략) 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 -----. 사. (생 략) 아. -----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 ---. 자. ~ 타. (생 략)	1.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바.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 사. (현행과 같음) 아. -----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자. ~ 타. (생 략)
2.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 -----. 가. ~ 다. (생 략)	2.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라 -----. 가. ~ 다. (생 략)

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라 -----.	라.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라 --.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 법 제6조 의2제3항에 따른 -----.	아.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 법 제6조 의3제3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자. ~ 더. (생 략)	자. ~ 더. (생 략)
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	러.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머. ~ 어. (생 략)	머. ~ 어.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현행과 같음)

[참고 2] 별표 3 개정안 전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하목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300 500	600 750	1,000 1,000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의2	300 100	600 200	1,000 1,0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3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호	경고	10	50
사. 가족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3	500	750	1,000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4	300	600	1,000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5	100	200	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6	100	200	500
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법 제60조제1 항제1호	2,500	3,500	5,000
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 항제2호	2,500	3,500	5,000
파.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7	500	750	1,000
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제1 항제3호	2,500	3,500	5,000
거.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8	500	750	1,000
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	법 제60조제1	2,500	3,500	5,000

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4호			
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5호	2,500	3,500	5,000
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6호	2,500	3,500	5,000
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	2,500	3,500	5,000
버.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9	500	750	1,000
서.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0	750	1,000
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200	400	1,000
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500	750	1,000
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것으로 기록한 경우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0	200	1,000
커.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300	600	1,000
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400	1,000
		100	400	800
		500	750	1,000
		500	750	1,000
		500	750	1,000
		500	750	1,000
퍼.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	법 제60조 제3항제3호	50	200	300

자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 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 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 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 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 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 등처리업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 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 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허.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3항제3호의2	50	200	300
고.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 자등				
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150	300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 재한 경우		100	20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 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 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100	150	200

자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 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 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 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 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노.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2	500	750	1,000
도.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보수 등 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3	500	750	1,000
로.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 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4	50	200	1,000
모.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 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2	100	200	300
보.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 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 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3	100	200	300
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 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4	100	200	300
오. 소유자 또는 운전자 법 제17조 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5	100	200	500
조. 소유자 또는 운전자 법 제17조	법 제60조	100	200	500

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2항 제5호의6			
초.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7	100	200	500
코.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8	100	200	500
토.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9	100	200	500
포.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 제4호의5	100	200	300
호.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10	100	500	1,000
구.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11	500	750	1,000
누.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 제5호	100	200	300
두.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50	100	150

	제3항 제5호			
루.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 제6호	100	200	300
무.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6호	300	400	500
		70	100	200
		500	750	1,000
		100	300	500
		5	10	50
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 제7호	100	200	300

수.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8호	100	200	300
우.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8호의2	100	200	300
주.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9호	100	200	300
추.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0호	50	100	200
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1호	30	50	100
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2호	50 100	100 200	300 300
후.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3호	300	3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